



제428 회국회(임시회)
제1 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요청 >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687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요청	2

I. 개요

1.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68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덕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3. 6.

(3) 회 부 일 : 2025. 3. 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하도록 하면서,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명시된 특정 범죄로 처벌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설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반면, 채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이 같은 의무규정이 없어 동 규정의 취지와 목적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5년마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4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요청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35조의4(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종사자가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채용한 날부터(휴직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의 경우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을 말한다) 5년마다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u>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명시된 특정 범죄로 처벌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설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두고 있음.¹⁾

□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종사자를 채용할 때에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결격사유 조화를 위한 범죄경력조화의 명시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채용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결격사유에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 1의6. (생략)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없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점검을 태만히 하는 경우 종사자 관리에 사각 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실정임.

□ 한편, 결격사유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2)에 따라 관찰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범죄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수사, 재판, 공무원의 임용 등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있음.

□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개별법률에서 각 대상자에 대한 학대범죄로 법원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바가 있는지 등을 1년마다 확인하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인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는 없는 것으로 보임.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채용 이후 취업제한사유 확인 관련 규정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⑥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⑥ 관할행정기관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이에 개정안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5년마다 관할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요청받은 관할 경찰관서는 이에 응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설 종사자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안전한 복지시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 한편, 범죄경력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³⁾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나, 개정안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 근거가 마련된다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정보 처리가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종사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지는 주기적인 범죄경력조회는 정보주체로서의 종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⁴⁾, 대상 시설 수가 약 6만 3천개소이고 조회대상자는 약 78만 4천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행정부담의 우려 등이 제기된 바⁵⁾ 있으나, 조회 목적이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로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조회 주기도 5년으로 비교적 장기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행정부담 우려를 완화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제391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법안심사소위원회('21.11.23)

< 2023년 말 기준 시설 및 종사자 현황 >

(단위: 개소, 명)

구 분		계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 질환자	노숙인	결핵· 한센	지역 자활센터	사회 복지관	어린이집
전체 시설	시설수	63,766	23,035	6,484	4,007	418	139	6	250	473	28,954
	종사자	784,623	385,259	33,270	44,540	3,764	1,948	102	2,667	10,273	302,800
	생활자	269,722	212,791	12,805	27,422	9,762	6,702	240	-	-	-
생활 시설	시설수	9,515	6,459	1,096	1,557	296	101	6	-	-	-
	정원	344,361	266,780	19,826	32,409	14,789	9,562	995	-	-	-
	현원	269,722	212,791	12,805	27,422	9,762	6,702	240	-	-	-
	종사자	178,904	143,394	10,333	20,517	2,982	1,576	102	-	-	-
이용 시설	시설수	54,251	16,576	5,388	2,450	122	38	-	250	473	28,954
	종사자	605,719	241,865	22,937	24,023	782	372	-	2,667	10,273	302,800

자료: 보건복지부

□ 다만, 경찰청은 법무부(검찰청)로부터 죄명·처분일자·선고결과 등의 자료를 통보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피해자 등 범죄사실(범죄의 내용)에 관한 자료는 통보받지 않기 때문에,

경찰청의 범죄경력조회 회보만으로는 현행법 제35조의2제2항 제2호6)에서의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6)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따라서 결격사유의 존부는 해당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서 경찰청으로부터 회보받은 범죄경력자료를 바탕으로 형집행종료(면제)일·적용법조·범죄사실 등의 정보를 관할 검찰청, 법원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외에 법무부, 검찰청 등 관계기관에 대해서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7)에 대한 범죄경력회보 시에도 관할 검찰청 및 법원 등에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7)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또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필요성은 채용 이후 뿐만 아니라 채용시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용시에도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주기적인 범죄경력조회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과태료를 부과⁸⁾하거나, 관리·감독 권한⁹⁾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범죄경력조회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¹⁰⁾ 등의 규정을 함께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3(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의3. 제1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9)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④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3(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다.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 조치인 것으로 보이나, 실제와 달리 개정안은 범죄경력 조회의 주체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설치·운영자로 제한하고 있어 수정 필요

「사회복지사업법」에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어,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채용 후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적인 범죄경력조회의 근거 규정으로 개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채용시 범죄경력조회는 ① 종사자가 직접 회보서 제출, ② 고용자(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③ 관리·감독 권한 있는 지자체(시·군·구) 조회로 이루어짐¹¹⁾

-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서 학대관련범죄 경력을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관련 법규와의 통일성 및 시기의 적절성 등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직접 조회하는 것이 아닌 관할행정기관장이 연 1회 이상 조회토록 개정함이 바람직

* 경기도 의정부시

-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 중인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결격사유 조회를 통해 이용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 기대

11)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37

- (경찰청)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해당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를 요청받는 기관을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서 ‘관계기관의 장’으로, 조회정보를 ‘범죄경력 자료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범죄경력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로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요청주체가 될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어 결격사유 조회 요청 주체를 관리감독기관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7

라 종사자 등 결격사유 조회 시 유의사항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지자체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5조, 제35조의2 등에 따른 임원 및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각 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기존 직원에 대한 범죄 관련 수사 등으로 인해 평소의 근무상태에 변화가 초래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기존 근무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아무 이유 없이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및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지 점검 목적의 이유로 범죄경력 조회 지양(법무부 등 관련기관 요청사항)

조회 주체	목 적	제출 서류	
본인	본인 스스로 확인	1. 조회 의뢰서(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4호 서식)	2. 조회의뢰자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 등) 사본 1부 3.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설치·운영자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및 고용의 합법성 확인	1. 조회 의뢰서(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3호 서식)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계약서 등 관련 법령과 운영자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자체장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및 고용의 합법성 확인		

* 위 요청서 서식은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신청서식 안내'에서 다운로드 가능

※ 조회 결과를 누설하거나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회 결과를 취득·사용하였을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 (「형실효법」 제10조제2항·제3항)



관련 근거 및 참고 자료

- 법무부 형사기획과-5895('20.7.29)
 - 경찰청은 죄명과 「형실효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선고 또는 처분을 기준으로 범죄경력을 회보함. 경찰청에서 범죄경력을 회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결격사유 기간 경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집행종료·면제 등의 정보, 죄명으로 구분되지 않는 범죄 정보 등을 관계 기관에 확인하여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무부 형사기획과-6278('10. 10. 28.)
 - 법령에 임명·고용 등의 자격제한 규정이 있는 한 해당 임명·고용 등의 주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니어도 형실효법 6조 1항 9호에 따른 회보가 가능하다고 할 것임
 - ※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제35조의2(종사자)에 따른 결격사유는 사회복지시설에 한하여 조회 가능(동 지침 5-6쪽 참고)